

## 인권이란?

1. 인권 인권은 인간답게 살 권리, 인간이 가져야 하는 권리 라고한다.  
인권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

<인간의 존엄과 가치>

2. 인권의 기본원칙을 알아보자.

첫 번째, 인권은 기본적 권리 -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

두 번째, 인권은 보편적 권리 -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권리

세 번째, 인권은 약자를 위한 권리 - 상대적 약자 우선(군인 인권은 사병 인권을 의미)

네 번째, 인권의 불가분성 - 편의상 나누어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연결되어 있음.

다섯 번째, 인권의 역사성 -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 사생활 같은 새로운 권리 생겨남

3. 인권 관련 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 (1) 세계인권선언 1948년 UN 총회에서 채택,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 헌법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세계 모두의 인권을 지탱하는 중요한 선언

- ①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 인간은 타고난 이성과 양심을 지니고 있으며, 형제애의 정신에 입각해서 서로 간에 행동해야 한다.

자유 :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 신체  
의 자유, 정신의 자유, 사회·경제적 자유

평등 :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형식적 평등과 실질  
적 평등

- ②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의미:** 어떤 누구라도 또는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

## (2) 대한민국 헌법

①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의미:** 모든 국민은 존엄과 가치를 지닌 권리의 주체라는 것, 국가는 그 인권을 보장할 의무의 주체

②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③ 10조와 11조 공통점은?

“모든 국민은~” 이라고 시작. 우리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10조~39조)에 서는 거의 모든 조항이 “모든 국민은~”이라고 시작.

차별하지 말라는 의미인것인데, 우리 학생들도 분명히 모든 국민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다, “어리다, 공부해야 한다” 는 이유로 사실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던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학생들도 성인들이 누리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

단, 자유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인식을 지닌채!

## 4. 정리

(1) **인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2) **세계인권선언:** 1948년 UN 총회에서 채택

(3)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의 핵심:**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권리의 주체라는 것, 국가는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의 주체라는 것

# 기본권이란?

1. 기본권 기본권은 무엇인가? 인권과 비교하여 설명해 보자.

**인 권:** 천부인권이라고 말하는 자연권

**기본권:** 자연권을 실정권화 한 것. 즉 헌법으로 보장되는 권리를 기본권이라 함

## 2. 기본권의 종류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이념, 절대적 기본권, 기본권의 목적 조항, 법률 제정과 해석의 기준, 공권력 행사의 한계.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평등권:** 기본권의 전제 조건.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형식적 평등:** 모두를 똑같이 대우하는 것. 정치적 혹은 시민적 평등

**실질적 평등:** 선천적·후천적 차이 고려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합리적 차별 가능. 남성의 병역 의무, 여성의 생리 휴가, 성적에 의한 대학 신입생 선발, 누진세 제도 등

(3) **자유권:**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받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

①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로운 활동뿐만 아니라, 신체의 온전한 상태를 보장 받을 권리. 죄형 법정주의, 미란다원칙이라고 알려진 고지 받을 권리, 적법절차의 원리, 영장 제도, 구속 적부 심사제, 형벌 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② **정신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③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프라이버시

④ **사회·경제적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의 자유

(4) **참정권:** 국민주권을 실현시키는 기본권. 국민이 능동적으로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권리. 선거권 및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공무담임권.

(5) **사회권**: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권은 각 나라의 형편에 따라 매우 다르다. 우리나라 사회권으로는 사회보장수급권,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 환경권,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보건에 관한 권리. 특히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대 국가에서는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는 기본권

(6) **청구권**: 수단적 권리로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① **청원권**: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해달라고 문서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재판청구권**: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③ **국가배상청구권**: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손실보상청구권**: 손실보상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사유재산권에 특별한 손실이 가해진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범죄피해에 대해 국가로부터 구조 받을 수 있는 권리

### 3. 기본권의 제한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헌법37조이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②항은 제한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하고,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하지 마라는 엄격한 의미

### 4. 정리

(1)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궁극적 이념으로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으로 이루어 졌다

(2) **헌법의 핵심적 가치**: 헌법 제 10조 국민은 권리의 주체이고, 의무는 국가의 것

(3) **학생인권**: 당연히 모든 국민에 포함되는 우리 학생들도 권리의 주체라는 것